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 76.10.19	(전화번호)	진 결 규 정 조 항 부 실 결 전 결 사 항		
처리기간	결재 1978.10.19 제2부서장				
시행일자					
보존년한					
보조기관	제2부서장 주택국장 주택기량 국장	전결	협	법무담당관(공보)인심사 회계과장 심식국장 관리국장 가량국장	
기안책임자	제2부서장 이상대	76.10.	조		
경수참조	유신 참조	기안참조	공발 인심 252호	공 계	1978.10.19 주서부국장
제목	176시행주택기량 재개발사업 건축계획공고				
(제안)					
내부결재					
1. 건설부고시 제145호 (74.5.13.) 제 136호 (75.8.25.) 및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212호 (76.9.4.) 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된 176시행					
주택기량 재개발사업 약한2일부, 옥수3 및 미이3동 3개 구역에 대한 건축					
계획을 주택기량 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건축법 제33조의2 규정					
에 따라 별첨과 같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법시행령 제52조 (3) 규정					
에 의거 다음과 같이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코지 합니다.					
가. 건축위원회 심의관계					
당시의 주택기량 재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					
건물만 우선 철거되고 주민 자력이 의한 건축 또는 개량토록 계획되어 있					
으며 남아있는 동접거를 앞두고 주택건립 및 기량이 시공한 실경으로 공람					
공고 기간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171조 ④ 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					
심의를 기청 예정되어서 지촌하는 주민의 의견과 함께 이를 종합 건설부					

과목계수  
 조서작성  
 10월 8일  
 정서  
 관인  
 발송

공고번호	16.10.11	제 2133
심사자	김재계장	변우일
서울특별시 공고제	후	정민
주최기관	주최기관	주최기관

주최기관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공표 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 145호 (74.5.15) 및 130호 (75.3.25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2호 (75.9.4) 등 산업입식계획 인가 ~~된~~ 된 당시 약 17% 시행 주무관청 재개발사업 지구인 이천2일부, 옥수3 및 미이3등 3개 구역에 대한 주무관청 추진에 관한 입식조치법 제2 및 건축법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을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7일간 사업구역내, 노후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.

2. 상기 건축 계획서는 당시 주무관청 주무관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공고에 의한 개별시공 승인은 ~~상관~~ *이유로 기록함*

1976. 10. .

서울특별시

다. 공고방법

본 공고본실에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시·내 입간 신문공고 및 시보에 게재코지함.

- 1) 공고종별 : 서울특별시 공고제 호 주무관청 재개발사업 건축계획공람 공고
- 2) 공고본 : (2,71장)의 나 공고인 참조
- 3) 소액예산 : 128,000원  
(산출근거 = 2단x40행x300원x개사=128,000원)
- 4) 예산과목 : 주무관청비, 기항행정, 업무관리, 수수료
- 5) 지출방법 : 공고후 청구에 의거 지출

첨부 건축계획서 1부.

(정민) . . . . . 5204 . . . . .



## 건 축 기 획 서



건설부 고시 제745호 (74.5.13.) 제136호 (73.3.25.) 및 서울특별시  
고시 제212호 (76.9.4.) 로 사업계획 인가된 아현2입부, 옥수3 및 미아3동  
3개지구, 대한 건축계획용 주택가량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 
건축법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.

### 1. 건축물의 높이

제개발 지구 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에 제기하는 높이 이하로 하되,  
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41조 (건축물의 높이제한) 규정을 따른다.

가. 단독주택 : 2층 (준치건물 및 간선도로변 제외)

나. 협동 " : 3층

단, 대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와 정부기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공인하  
는 교회, 학교, 유치원, 고아원, 양노원, 보자원, 사찰, 기락 이에 준하는 건물  
로서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주위 미관에 지장이  
없는 범위내에서 건축법 및 기락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2. 건축물의 규모

제개발 지구 내의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법제39조  
(건축물) 및 동법제40조 (응축물) 규정에 의한 규모로 하되 그 건축면적은  
다음에 제기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가. 단독주택 :  $33 M^2$  (10평)

나. 협동 " : 세대당  $33 M^2$  (10평)

다. 주택점포 겸용 및 기락 :  $53 M^2$  (16평)

### 3. 건축물의 모양

가. 건축물의 평면은 대지여건에 따르되 구역전체 영구조성에 조화되  
지 않은 형태로 한다.

나. 건축물의 지붕은 3층 일터 평스택브, 2층 이하는 자유로 한다.

### 4. 부면의 위치

건축법 제4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2의 규정등에 따른다.